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20

발의연월일: 2024. 8. 19.

발 의 자:정일영·복기왕·강준현

허성무 • 박희승 • 박상혁

허종식 • 한민수 • 박정현

이기헌 · 노종면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와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원,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애인에 대하여 연 200만원,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'04. 1월 기준 약 71.1에서 '24. 5월 기준 114.09로 무려 60%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추가공제 금액은 '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추가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.

이에 제51조(추가공제)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(안 제5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1항제1호 중 "100만원"을 "2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200만원"을 "40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50만원"을 "1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100만원"을 "2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추가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 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추가공제) ① 제50조에 따	제51조(추가공제) ①
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	
(이하 "기본공제대상자"라 한	
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	
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	
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	
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	
한다. 다만, 제3호와 제6호에	
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	
를 적용한다.	
1. 70세 이상인 사람(이하 "경	1
로우대자"라 한다)의 경우 1	
명당 연 <u>100만원</u>	<u>200만원</u>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	2
(이하 "장애인"이라 한다)인	
경우 1명당 연 <u>200만원</u>	<u>400</u> 만원
3. 해당 거주자(해당 과세기간	3
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	
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	
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	
로 한정한다)가 배우자가 없	
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	

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	
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	
있는 여성인 경우 연 <u>50만원</u>	<u>100</u> 만원
4.•5. (생 략)	4. • 5. (현행과 같음)
5.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	6
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	
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	
가 있는 경우 연 <u>100만원</u>	<u>20</u> 0만원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4.

6.

② ~ ④ (생 략)